

수업결과물 저작권에 관한 지침

제정 2016.03.01.

개정 2018.03.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수업 및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해 창작된 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창작활동을 장려함과 아울러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권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3. ‘공동저작권’이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2인 이상의 교직원 및 학생이 공동으로 창작에 기여하여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저작권을 말한다.
4.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그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저작권법을 준용한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① 수업 및 비교과과정을 통해 제작한 창작물의 경우 해당 학생이 저작권을 갖는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일반적인 지도를 넘어, 구체적으로 작품의 창작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교수와 학생의 공동작업으로 보고, 학생과 본교가 공동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 수익) ①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저작권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② 단,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하도록 동의한 경우는 발생 수익에 대하여 제3자와 배분하여야 한다.

③ 본교와 본교의 산학협력단이 제3자로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발행.공표.전시.방송 또는 공중송신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발생 수익을 5:5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배분률을 조정할 수 있다.

④ 3항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⑤ 저작권자가 원하는 경우, 본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저작권 등록을 위한 일체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취득, 유지, 이전 등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 부서에 지급 한 후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5조(분쟁의 조정) 창작자가 본 규정과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저작권의 이용)

① 본교와 본교의 산학협력단은 홍보 등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자의 의무)

① 저작권자는 재학(직) 중 발생하는 수업결과물과 프로젝트결과물 등 제작 완료된 제품에 학교명 명기할 의무가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